

최저임금, 이것만큼은 알자!

2015년 시간급 **5,580원** **5,580원**
5,580원 5,580원

최저임금제도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1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 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 모두 적용 됩니다.

3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4 위반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최저임금 위반 상담은
국번없이 **1350**

쉽게 알아보는 최저임금 계산법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월~금요일 8시간)인 근로자가 7월 월급 1,239천원을 받았을 경우)

1 7월에 받은 월급에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만을 추려냅니다.

월급 명세서(7월)	
기본급	1,050,000원
상여금	80,000원
직무수당	50,000원
시간외수당	39,470원
가족수당	20,000원
급여 계 1,239,470원	

※ 추려내는 기준

1.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포함
2. 소정의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외의 임금은 제외(시간외 수당 등)
3.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적 임금은 제외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기본급	1,050,000원
직무수당	50,000원
임금 계	1,100,000원

2 추려 낸 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후, '15년 고시된 최저임금(시간급 5,580원)과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시간당임금 환산방법 = 추려낸 임금 ÷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

※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급인 경우에는 209시간 적용

■ **판단** : 110만원 ÷ 209시간 ≒ 5,263원 < 5,580원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 209시간 = {(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 52주 + 8시간} ÷ 12월

나의 임금과 최저임금 비교는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www.minimumwage.go.kr)에서 참고



고용노동부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최저임금위원회
Minimum Wage Council

※ 사용자가 본 전단지를 근로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1조 주지의무(위반시 100만원이하 과태료)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 됩니다.

청소년 **알바** 체크리스트



1. 서면 근로계약을 작성했나요? ☒ yes ☐ no
2. 나이를 확인 했나요? ☒ yes ☐ no
 ☞ 만18세 미만의 경우 부모님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3.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과 급여가 명시 되었나요? ☒ yes ☐ no
4.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하기로 하고 개근하였나요? ☒ yes ☐ no
 ☞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5. 계약서 상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 외에 추가로 일한 시간이 있나요? ☒ yes ☐ no
 ☞ 연장근로에 대해 50% 할증된 임금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
6. 오후 10시 이후 야간근로를 한 적이 있나요? ☒ yes ☐ no
 ☞ 18세 미만자의 야간근로는 지방고용노동청(지청)의 인가를 받아야 가능하고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에 대해 50% 할증된 임금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
7. 연장 근로와 야간 근로를 겹치게 근무하였나요? ☒ yes ☐ no
 ☞ 각각 할증(50%+50%)된 임금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



주휴수당 이 뭐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통상 일요일)을 부여 하여야 하는데, 이 유급휴일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이에요. 주 5일, 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주 15시간이 넘으면 비례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례 시급 6,000원인데 1일 4시간, 1주(5일)간 총 20시간 개근한 근로자의 주급은 얼마 일까요?
 ☞ $6,000\text{원} \times 24\text{시간(주5일 20시간} + \text{유급주휴시간 4시간)} = 144,000\text{원}$



소정근로시간 외에 추가로 일한 경우 할증 임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소정근로시간 외에 추가로 연장·야간 근로를 하였다면 시급의 50%를 각각 가산하여 임금을 주어야 해요.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

수 당	계 산 식	
연장 근로수당	(시급 + 50%)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시간이 겹친다면 중첩 적용 (시급 + 50% + 50%)
야간 근로수당 (오후 10시~익일 오전6시)	(시급 + 50%)	

사례 시급 6,000원이고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은 오후 6시~10시까지인 근로자가 오후 6시~자정(12시)까지 일했다면 받아야 할 일급은 얼마 일까요?
 ☞ $(6000\text{원} \times 6\text{시간}) + \text{연장가산임금}(6000\text{원} \times 50\% \times 2\text{시간}) + \text{야간가산임금}(6000 \times 50\% \times 2\text{시간}) = 48,000\text{원}$

내가 받은 임금이 최저임금 이하면 국번없이 **1350번**으로 전화 상담, 사업장이 소재한 지방고용노동청(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요청**하시면 돼요.